

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73호
- 나. 발 의 자 : 아이수루 의원(찬성자 44명)
- 다. 발의일자 : 2022년 08월 29일
- 라. 회부일자 : 2022년 09월 02일

2. 제안이유

- 현재 관광취약계층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1조의3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등의 적용대상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음.
- 서울시는 관광취약계층 중 신체적 제약으로 여행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자, 장애인, 임산부,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등의 ‘무장애 관광’ 정책을 시행 중임.
- 따라서 시민 관광복지를 확대하는 ‘무장애 관광’을 환경적, 정보적, 서비스 측면에서 양질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무장애 관광과 관광약자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무장애 관광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의2 신설)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조례안은 관광취약계층, 관광약자, 무장애 관광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고 관광약자와 관광취약계층 등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과 이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음.

나. 관광약자와 무장애관광의 정의(안 제2조)

- 최근 신체적, 경제적 제약으로 관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편적 관광 향유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광약자에 대한 배려는 미흡한 실정임. 이에 개정안은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을 위한 관광취약계층, 관광약자, 무장애 관광에 대한 용어를 신설함.

<신구조문 대비표>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정의) 이	조례에서 “관광취약계층”이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	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<신 설>		1.	“관광취약계층”이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	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말한다.</u></p> <p>2. “<u>관광약자</u>”란 <u>관광취약계층, 장애, 노령,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</u>을 말한다.</p>
<p><신 설></p>	<p>3. “<u>무장애관광</u>”이란 <u>관광지,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·이용·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</u> 말한다.</p>

- 개정안은 관광취약계층을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¹⁾을 준용하여 소득 수준, 장애인,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·사회적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.
-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을 지원(2인기준 27~34만원×1,455개팀)하는 “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지원” 사업이 운영 중임.
- 또한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 동반자 등 물리적인 이동에 한시적·영구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관광지 접근·이동 및 관광상품을 이용하는

1) 제41조의3(관광취약계층의 범위)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
 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
 - 다. 「장애인연금법」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
 - 라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4. 그 밖에 경제적·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
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‘무장애 관광’ 사업이 운영 중임.

- 2018년에 “서울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계획” 을 발표하고 서울다누림관광센터(무장애 관광 지원센터)를 개소하는 등 시민관광 복지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임.
- 개정안은 또한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장애, 노령, 임신 등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‘관광약자’ 로 정의하고, 관광서비스의 이용과 접근에 불편이 없는 ‘무장애 관광’ 을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함.
-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활동비 지원 등 경제적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정책보다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무장애관광과 같은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관광환경이나 여건 개선 등이 보다 포괄적·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.
- 따라서 관광취약계층, 관광약자, 무장애관광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는 것은 보편적 관광향유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임.
- 현재 각 시·도마다 관광약자와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정책용어도 상이함.
- 한편 경기도의 경우 관광취약계층, 관광약자의 개념을 사용하며 「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」에서 「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(2019.2.)하였으며, 대전광역시의 경우 관광취약계층에 노인, 임산부, 영유아 동반가족까지도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음.

다. 무장애 관광 지원(안 제5조의2)

- 개정안은 시장이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, 이동 편의 증진, 관광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.

<신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조의2(무장애 관광 지원) 시장은 관광약자의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,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이는 무장애 관광조성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관광지, 관광상품, 관광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됨.
- 장애인구와 노령인구 증가 등 복지관광(무장애 관광) 정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그 근거를 견고히 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
붙임 1

집행부 검토의견

의안번호
7 3

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
주 내 요 용	아이수루 의원	2022.8.29.	문화체육관광위원회
추 경 진 과	<p><제안이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관광취약계층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1조의3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등의 적용대상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음. ○ 시민 관광복지를 확대하는 ‘무장애 관광’을 환경적, 정보적, 서비스 측면에서 양질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함. <p><주요 요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무장애 관광’과 ‘관광약자’의 정의를 규정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광약자: 관광취약계층, 장애, 노령,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 ○ ‘무장애 관광’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. 		
부 검토 의 견	<p>원안가결() / 수정가결 (○) / 부결() / 보류()</p>		
쟁점 사항 (의회 동향, 문제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조례는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1조의3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등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어, 관광약자 등 무장애관광으로 시민관광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 동의함 ○ 다만, 추가되는 관광약자, 무장애관광의 범위는 현재 조례명상 관광취약계층을 넘어서는 범위이므로 <u>조례명 개정을 포함한 일부개정</u>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		
담 당 부 서	관광산업과	팀 장	홍승현 (☎2133-2781)
			담 당 김중욱 (☎2133-2787)